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와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회의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총회: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구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캠퍼스 학생회장 및 캠퍼스 비례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총회의 결정권을 위임받은 의결기구
3.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캠퍼스 학생회장으로 구성되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정권을 위임받은 의결기구
4. 총학생회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되어 본회를 대표하는 회원
5.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이 지명하여 총학생회장을 보좌하고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회원
6. 캠퍼스 학생회장: 해당 캠퍼스 학생회칙에 따라 선출되어 캠퍼스를 대표하는 회원
7. 집행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부 부장 및 임원으로 구성된 최고 집행기구
8. 감사위원회: 본회의 활동에 대한 감사기구

제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학원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재학생 또는 수료등록생
2. 준회원: 수료 미등록생 또는 휴학생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의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4.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5. 본회의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6.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 본회의 회원은 학생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8.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구성)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부, 감사위원회로 구성된다.

② 본회는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특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제7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④ 본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의 회원들로 인해 보장받는다.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8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9조 (권한)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원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토의 및 결정권
2.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권

② 학생총회의 무산, 기타 사유로 의결을 할 수 없을 시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0조 (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학생총회에서 의장을 호선한다.

제11조 (소집) 학생총회는 다음의 호에 따라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1. 학생총회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2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학생총회의장이 소집한다.
2. 학생총회의장은 학생총회 10일 이전에 학생총회를 회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의결) 학생총회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3조 (지위)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의 자치기구의 대표자 및 회칙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학생총회 아래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전학대회의 의결사항은 학생총회의 의결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14조 (대의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학생회장
3. 캠퍼스 비례대표
4. 동아리 연합회장
5. 총학생회 집행부장(단, 최대 3인으로 제한)

② 매 학기 개강일 기준 회원 60인 초과인 캠퍼스는 캠퍼스 학생회장이 비례대표를 회원 60명당 1명을 지명하며 최대 3명으로 제한한다.

③ 각 캠퍼스의 캠퍼스 학생회가 없을 때 캠퍼스를 대표하는 1인이 캠퍼스 학생회장 권한대행의 형태로 참석한다.

④ 전학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당선 이후 1년까지로 하며(단, 캠퍼스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학기),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15조 (구성) 전학대회는 제14조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16조 (의장)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전학대회에서 의장을 호선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대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2. 본회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심의 의결권
3. 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4. 학생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에 대한 심의 의결권
5.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6. 본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
7. 본회의 결산 승인 및 감사 보고서 채택
8.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권
9. 총학생회장 선출 및 탄핵 요구권
10. 기타 본회 전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 및 결정권

제18조 (소집) 전학대회는 다음의 호에 따라 전학대회를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전학대회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매 학기 종료 전까지 정기회의를 개최할 의무를 가진다.
2. 임시회의는 본회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나, 전학대회 대의원 3분의 1 또는 중운위 2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전학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의결) 전학대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20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21조 (구성) 중운위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캠퍼스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

제22조 (의장) 중운위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3조 (업무 및 권한) 중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예산 상정
2. 회칙 개정 발의
3. 학생회비 분배에 대한 결정권
4. 총학생회 집행부 구성 검토 및 승인권
5. 학생총회, 전학대회 소집 요구권
6. 총학생회장 선출 및 탄핵 요구권
7. 특별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결정권
8.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권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에 관련된 소집 및 결정권
10. 기타 본회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 및 결정권

제24조 (소집) 중운위는 다음의 호에 따라 중운위를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2달에 1회 이상으로 하며, 시기는 중운위에서 정한다.
2. 임시 회의는 (부)총학생회장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의결) 중운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제26조 (총학생회장단) ①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와 중운위의 의장이 되고 집행부를 통할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입후보한 정회원 중에서 전학대회를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장을 호선한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④ 총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11월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입후보 절차를 안내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선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학대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⑤ 총학생회장은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집행, 집행부 각 부장의 임명, 학생총회 소집, 전학대회 소집, 중운위의 소집 요구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기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이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동시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학대회에서 권한대행을 호선한다.

제27조 (겸직금지) 총학생회장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1. 각 캠퍼스 학생회 회장단, 단원
2. 전공조교
3. 집행부 부장
4. 동아리회장 및 부회장
5. 감사위원회위원(장)
6. 기타 총학생회장단의 직무와 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치단체 내 직책

제28조 (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총회, 전학대회의 의장이 된다.
2.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3.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4.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의 정책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피력한다.

제29조 (탄핵) ①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학대회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
2.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② 집행부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집행부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학생총회에 상정하고 학생총회를 소집한다.

③ 상정된 탄핵안은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한다.

④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발의된 즉시 총학생회장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단 탄핵 안건이 학생총회에서 부결된 경우 총학생회장단은 직무를 복귀한다.

제6장 캠퍼스 학생회

제30조 (지위) 캠퍼스 학생회는 각 캠퍼스의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1조 (구성) ① 캠퍼스 학생회는 해당 캠퍼스 전체 학생으로 구성된다.

② 캠퍼스 학생회는 해당 캠퍼스 학생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회칙과 조직을 가진다.

제32조 (캠퍼스 학생회장) 캠퍼스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른다.

1. 캠퍼스 학생회장은 해당 캠퍼스 학생회를 대표하며 전학대회의 대의원과 중운위의 운영위원이 된다.
2. 캠퍼스 학생회장은 해당 캠퍼스 학생회칙에 따라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로 한다.
3. 캠퍼스 학생회장이 선출되었으나 본회의 활동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캠퍼스 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 캠퍼스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에 소속된 전공조교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5. 캠퍼스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이후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캠퍼스 사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 (업무 및 권한) 캠퍼스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총학생회의 목적 중 각 캠퍼스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캠퍼스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자치적으로 수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 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34조 (임시집행체계) 캠퍼스의 본원과 분원 상관없이 학생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각 캠퍼스에서 임시집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캠퍼스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35조 (보고의무) 캠퍼스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운위에 보고한다.

1. 캠퍼스 학생회장단 및 과대표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제36조 (운영) 캠퍼스 학생회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37조 (겸직) 캠퍼스 학생회장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있다.
1. 전공조교
2. 집행부 부장, 부원
3. 동아리회장 및 부회장
4. 감사위원회위원(장)
5. 기타 캠퍼스에서 필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직책

제7장 집행부

제38조 (구성) ①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부 부장 및 임원으로 구성된다.
②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유고 시 중운위가 집행부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 (각 부 부장 및 임원) ① 집행부의 각 부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학생회장이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부 각 부의 부장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총학생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집행부 각 부의 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각 부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단, 정회원 중 부원을 희망하는 자가 있을 시 임원으로 임명한다.

제40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전학대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2.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운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3.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협의권을 대행한다.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8장 동아리 연합회

제41조 (지위) 동아리 연합회는 학내의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42조 (구성) 동아리 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43조 (업무 및 권한) 동아리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2. 동아리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제44조 (운영) 동아리 연합회는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45조 (보고의무) 동아리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중안위에 보고한다.
1. 동아리 연합회 회칙제・개정
2. 동아리 연합회 회장단등의 선출직의 선출・탄핵
3. 기타동아리 연합회 운영상의 중대한 사항

제9장 감사위원회

제46조 (구성)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집행부를 제외한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중운위에서 추천한 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로 한다.

제47조 (업무 및 권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감사 권한
2. 캠퍼스 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안에 대한 감사 권한
3.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관할 권한
4. 기타 본회의 활동이 회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시정을 요청할 권한

제10장 재정

제4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 (예산)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51조 (집행 및 관리) ① 예산은 총학생회장의 책임하에 본회 명의로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본회의 목적에 맞게 집행한다. 단, 총학생회장 명의에 본회 명칭이 기재된 통장계좌도 인정한다.
② 예산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고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기타 수입금은 수입 내역에 맞게 집행한다.

제52조 (결산) ① 결산은 집행부에서 반기별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내역은 계좌 입출금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통해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

제11장 선거

제53조 (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54조 (선거권) 본회 회원 중 정회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55조 (피선거권) 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본회 정회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 기준을 만족한 자에게 주어진다.

제56조 (선거시기) 총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중운위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② 중앙선관위는 중운위에서 3인 혹은 5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권한을 갖는다.
④ 중앙선관위 위원은 해당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58조 (보궐선거) ① 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 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일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집행부 대의원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선거는 정식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59조 (선거시행세칙) 선거와 관련하여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중앙선관위에서 정한다.

제60조 (당선무효)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해 집행부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중운위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심사하고, 재적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중앙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제61조 (총학생회장 최종 미선출)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도 등록한자가 없고, 전학대회에서도 호선한 자가 없을 때, 1년간의 총학생회 운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중운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2조 (당선공고) 중앙선관위는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인수위원회) ① 총학생회장 당선인은 원활한 총학생회 인수인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당해연도 총학생회장단과 집행부, 인수위원회는 상호협력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인수·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제출한다. 이후에 총학생회장 당선인과 당해연도 총학생회장단은 협의를 통해 임기만료 이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장 회칙 개정

제64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3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의하는 경우
2. 전학대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는 경우
3. 총학생회장이 직접 발의하는 경우

제65조 (공고) ① 전학대회 의장은 회칙 개정안이 발의된 후 7일 이내에 회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7일 이상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회칙개정의 의결은 전학대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의결) 회칙 개정안은 전학대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 (공포) 전학대회 의장은 확정된 회칙개정안을 7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68조 (발효) 회칙 개정안의 발효는 회칙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부칙에 발효 일자를 명시한 경우 이에 따른다.

제13장 보칙

제69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학대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1. 8. 20.>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캠퍼스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캠퍼스 대표학생이 캠퍼스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